

총 합 감 사



-2025년 동두천시 종합감사-
감사결과 보고서

2026. 1.



경기도 감사위원회

【 감사 1과 】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II. 감사대상기관 현황	2
III. 감사결과	3
① 감사결과 총괄	3
② 종합의견	3
③ 주요 지적사항	4
IV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	19
① 본처분	19
② 현지처분	20
V. 감사만족도 조사	21

I 감사 실시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85조 및 제190조 등에 따라 2020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동두천시를 「2025년 감사 기본계획」에 반영하여 종합감사 시행 ※ 동두천시 지난 감사: 2020. 4. 27. ~ 5. 12.
-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들과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공개감사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민의 권익을 보호

2. 감사대상 및 중점사항

- 감사대상: 동두천시 (소속기관 포함)
- 감사범위: 2020. 4. 1. 이후 업무 전반 (사전 자료요구 2022. 1. 1. 이후)
- 중점사항
 -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·관행 최우선 해결
 - 민생안정을 위한 안전, 인·허가,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감사
 - 예산, 계약, 보조금 등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로 재정 건전성 제고

3. 감사실시 과정

- 사전준비: 자료수집(2025. 9. 19. ~ 10. 12.), 착안회의 실시(2025. 9. 30.)
- 감사기간: 2025. 10. 29. ~ 11. 6.(7일간) ※ 사전조사 : 10. 13. ~ 10. 21.(7일간)
- 감 사 반: 감사단장(감사1과장) 등 4개팀 19명 / 도민감사관 별도: 16명

4. 감사결과 처리

- 마 감 회 의 : 2025. 11. 6. ※ 동두천시 부시장 등 참석
- 감사위원회: 2025. 12. 22. / 2026. 1. 12. / 2026. 1. 19. 심의

1. 일반현황

- 경기도의 북부에 위치한 군사·행정·주거 기능이 결합된 도시로, 도로, 상수도 하수처리 등 도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, 최근에는 역세권 개발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도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

- 인구, 면적 등 일반현황

(2025. 10. 31. 기준)

인 구	면 적	행정구역 수
86,660명 (도내 0.63%, 28위)	95.66km ² (도내 0.9%, 21위)	8동 / 161통 / 1,255반

2. 조직 및 인력

- 조 직: 4국 2담당관, 20과, 1의회, 1직속(2과), 4사업소, 8동

- 인 력: 718명

※ 본청(한시지구 포함) 487, 의회 21, 직속기관 43, 사업소 71, 동 96

3. 재정규모

- 예산규모 (2025년 본예산 기준)

(단위: 억 원)

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
6,082	5,387	695	12.57%	49.24%

4. 주요사업 현황

-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(2024~계속, 150백만 원(2025년 기준))
- 큰시장·세아프라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(2024~2026년, 16,700백만 원)
- 송내주차타워 건립사업(2025~2028년, 44,000백만 원)
-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(2023~2028년, 122,963백만 원)
- 왕방계곡 숲길(트레일) 조성사업(2024~2026년, 11,500백만 원)

1. 감사결과 총괄

○ 2025년 동두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

행정상 (건)						신분상 (명)				재정상 (백만 원)			
구분	계	기관 경고	시정	주의	통보	계	중징계	경징계	훈계	계	추징	회수	환급
본처분	51	1	13	36	16	40	-	4	36	150.6	150.4	0.2	-
현지처분	2	-	-	2	-	-	-	-	-	-	-	-	-

※ 행정상 처분의 경우 중복 처분 존재 (시정·통보 동시처분 등)

2. 종합의견

○ 이번 동두천시 종합감사는 2020년 5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제보, 언론보도 및 도민감사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밀착형 감사를 실시하였고, 동두천시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 결과 직전 감사에 비해 전체 지적 건수는 소폭 감소함

※ (행정상) 61건 ^{2020년} → 53건 ^{2025년} / (신분상) 41명 ^{2020년} → 40명 ^{2025년}

○ 현장면책심의회(2025. 11. 6.)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을 한 3명(3건)을 면책하고, 적법한 사업추진 등을 위한 13건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함

○ 다만,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번 감사를 통해 이를 진단하고 법령에 근거한 시정방향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함

○ 특히,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,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,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 인원 비율 미준수, 산지전용허가(협의) 사후관리 부적정, 위생업소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, 마약류 관리 부적정,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,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업무 소홀 등 각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

3. 주요 지적사항

1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

- 가과, 나과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대상자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29조의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료를 감면(면제) 적용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

조치 사항

-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(기관경고)
-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, 부적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(통보)
-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 (통보)

2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

- 다소는 공공체육시설인 야구장에 대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야 하는데 취소신청이 없는데도 임의로 이전 달의 미사용일수를 공제하고 사용료를 징수,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하여 징수하는 등 사용료를 부당하게 처리함
- 또한 신청자의 부실한 신청서 제출 및 신청서 미제출에도 사용을 승인하고 담당자 자체관리 사용대장과 공문상 사용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사용내역 관리가 부적정함

조치 사항

-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 사용료 부과·징수 및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 등의 문서 접수·관리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

3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 인원 비율 미준수

- 라과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미도과 인원에 대한 전보 비율이 연간 10% 이내로 한정해야 하는데도,
- 2022년 49.7%, 2023년 48.9%, 2024년 46.2%, 2025년 41.1%로 과도하게 전보인사

조치 사항



- 지방공무원법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 인사업무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0명)

4 산지전용허가(협약) 사후관리 부적정

- 마과는 “○○○동 산○○-○○번지의 1필지” 등 ○○건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(협약)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구를 미 실시 하였으며, 그 중 “○○○동 산46-○○번지” 등 ○○건은 지급보증서로 예치된 복구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비 사용 불가
- 그리고 “○○동 ○○○번지의 1필지” 등 ○○건의 산지전용허가(협약)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구설계서 미제출 및 과태료 미부과
- 또한 “○○동 산○○번지의 1필지” 등 ○○건의 산지전용허가(협약)는 목적사업 (주택, 근생 등)의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착공함*

*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·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아야 효력 발생

조치 사항



- 산지전용허가(협약) 사후관리 관련 업무 철저 (주의)
- 산지전용허가(협약) 사항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(과태료 부과 포함), 허가기간 만료지 복구, 건축허가(신고) 이행 및 산지전용허가(협약) 시 행정처분[건축허가(신고) 등] 후 착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 담당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(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0명)

5 위생업소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

- 바과는 「식품위생법」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(A)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영업정지 7일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함
-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(B)는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재검사에서 적합이 나왔다는 사유로 행정처분하지 않음
- 유사 의료행위(불법 문신 등)를 하여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한 미용업자(C)에게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인정해 주어 과태료(80만 원)를 1/2 감경하여 40만 원을 부과함
- 같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 하여야 하는데도 ○개 업소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함

조치 사항



-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의 업무 철저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경징계 ○명, 훈계 ○명)

6 마약류 관리 부적정

- 사과는 ○개 병원·약국의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전신마취제 등 15종의 마약류 약 ○○○○정(앰플 포함)의 실물 재고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폐업 처리함으로써 유실·불법유통 등 그 행방을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게 함
- 2024년 휴업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 처분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휴업 처리한 결과 정신신경용제 등 3종의 마약류 ○.○○정의 재고량이 차이나며, 일부 마약류는 의약품 전용 용기가 아닌 약 포장지에 조제·밀봉 또는 개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음

조치 사항


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마약류 관련 업무 철저 (주의)
-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나는 휴·폐업한 마약류취급자에게 행정처분, 고발(수사의뢰) 등의 필요 조치 (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7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

- 아과는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부령 제230호, 2010. 3. 16. 시행)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및 임대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,
- 민간이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제안한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,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

조치 사항

-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 (주의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8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업무 소홀

- 자과, 차과, 카과, 타과, 파과, 하과, 아과, 자소는 건설공사를 감독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·통보하지 않았음
- 또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

조치 사항

-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검토·승인 및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(주의)
- 시험실의 규모·시험 장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를 부적정하게 한 건설 사업자,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해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 8] “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”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 (통보)
- 업무관련자 신분상 조치 (훈계 ○명)

IV

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1. 본처분

- 행정상 조치: 51건 (기관경고 1, 시정 13, 주의 36, 통보 16)
- 신분상 조치: 40명 (경징계 4, 훈계 36)
- 재정상 조치: 150,638천 원 (추징 150,422, 회수 216)

“표 생략”

2. 현지처분

- 행정상 조치: 2건 (주의 2)

“표 생략”

1. 조사 개요

- 기 간: 2025. 10. 29. ~ 11. 6. (7일간)
- 대 상: 감사장 방문 수감공무원 전체 (총 67명 참여)
- 내 용: 감사관의 자세, 전문성, 불필요한 자료요구 여부 등 설문서 작성

2. 감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

- (총 평) 자료요구 적정성, 감사관 전문성, 업무추진 도움여부 등에 만족도가 높음
 ☞ 대체로 긍정적 평가임

연번	설문내용	“긍정” ¹⁾	“보통”	“부정”
1	감사관 친절도	88.1%	10.4%	1.5%
2	의견청취 노력도	85.1%	13.4%	1.5%
3	감사관 전문성	89.6%	9.0%	1.5%
4	업무추진 도움여부	89.6%	10.4%	0.0%
5	자료요구 적정성	94.0%	6.0%	0.0%
6	지적사항 수용여부	89.6%	9.0%	1.5%
7	면책제도 인지여부	32.8%	49.3%	17.9%

- (애로·건의사항) 연접허가 등 현황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, 도사무 위임조례 상 불명확한 문구 개정, 사전감사와 본감사 기간 사이 자료요구 지양 요청

3. 조치사항

-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공유하여 향후 현지감사 대응 개선자료로 활용

1) ‘매우 친절’, ‘친절’ 등의 평가를 “긍정”으로 산정